

## 요양비 급여제도 일부가 개정되어 2023.7.1.부터 시행됩니다.

- ① 1형 당뇨병환자가 혈당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그동안 '요양비 처방전' 서식에 제품별 명칭 표기 및 등록 제품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제품을 등록 신청할 때마다 관련 고시 개정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로 급여제품 등록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3.7.1.부터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신규제품 등록 시 처방전 서식에 제품별 명칭 표기를 삭제 및 총 처방기간만 명시하도록 하여, 우리공단에 제품등록 신청만으로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하게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1형 당뇨병환자의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였습니다.

- ②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다른 임대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방기간을 확대하고, 당월 하루평균사용기준(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급여대상에서 탈락 시, 해당 환자가 다시 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수면다원검사 등을 실시해야하는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순응 후 처방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월별 하루 평균사용기준 미 충족 환자의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양압기 월별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 이상(12세 이하인 경우 미적용) 실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급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다만, 양압기 대여업체(준요양기관) 및 공단의 제도 개편에 따른 준비기간 필요에 따라 양압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급여의 정지) 법 개정('20.7.8.시행)따라, 국의 체류기간 중 보험급여가 정지됨을 가입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별 '요양비 처방전' 서식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보건복지부고시 2023-123호(2023.7.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과 함께→뉴스/소식→공고입찰